

# 난민법안 조항별 검토의견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2조 (정의)	2. “난민”이란 인종·종교·국적·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...	2. “난민”이란 인종·종교·국적·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... ※ 대안: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협약의 규정보다 확대됨</li> <li>난민인정요건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 난민이 아닌 자들이 대량으로 인정될 우려</li> </ul> <p>영문: well-founded fear of persecution 불문: craignant avec raison</p>
	4. “난민신청자”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 나. 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 다.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	4. “난민신청자”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 대한민국 안에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후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 가. <삭제> 나. <삭제>  다. 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한민국 “에” 신청을 한다는 규정은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. 국외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운영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</li> <li>단지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불인정 결정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행정부 결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</li> <li>법무부의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 지위를 상실하고, 소송 제기 중인 자는 그 불인정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함</li> <li>3심 종료시 까지 장기간 소요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 ※ ‘10. 11월 현재 최종확정판결 기준 원고승소율은 13.7%(인용 28, 기각 177)임</li> <li>난민인정결정은 결국 대법원이 처분하는 것이 되어 법무부 처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</li> </ul>
	5. “재정착난민”이란 해외 난민 중 대한민국으로의 재정착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.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정착난민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“해외난민”的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재정착난민 수용은 이민정책, 탈북자 수용문제, 국민 정서, 외국인사회통합 등과도 관계된 사안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</li> </ul>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5조 (난민인정의 신청)	⑤ 난민신청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(난민인정불허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)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난민신청하기만 하면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음. 특히 재신청을 허용할 경우 무한정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</li> </ul>
제6조 (공항·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)	<p>① 「출입국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 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.</p>	<p>① 「출입국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<u>공항·항만에서</u>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&lt;삭제&gt;</p> <p>⑤ &lt;삭제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한민국에서의 “국경”的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항·항만에서의 신청으로 제한할 필요</li> <li>• 공항·항만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그 특성상 국경관리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민인정절차 (fast track)를 운영할 필요</li> <li>• 필요시 신원확인을 위해 구금 상태에서 신속하게 심사</li> </ul>
제9조 (입증책임 및 입증정도)	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 하여서는 안된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체계에 맞지 않고 명문규정으로 두게 되면 사법권 제약</li> <li>• 법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음</li> </ul>
제16조 (서류 등의 열람·복사)	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·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<u>지체없이</u>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·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<u>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</u> 이에 응하여야 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재 난민심사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“지체없이” 응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 예상</li> <li>• 서류 등의 열람·복사권 보장을 위해서는 난민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, 질높은 통역서비스 제공, 녹음·녹취시설 등 제반 여건이 우선 갖추어져야 할 것임</li> </ul>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21조 (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인정의 신청)	<p>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신청 당시 이미 「출입국관리법」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 그 보호기간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.</p>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보호기간이 3개월 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</li> <li>현재도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, 집행정지신청, 취소소송 등 행정적·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</li> <li>미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보호에 대한 법원의 허가제는 없음</li> </ul>
제27조 (인도적 지위의 부여 절차)	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는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한다. 다만, 난민인정의 신청과 인도적 지위 부여의 신청은 동시에 혹은 선택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,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만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부여할 수 있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법상 '인도적 지위'는 신청자의 요청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, 난민 인정 요건 충족지 못한 자에 대해 인도적 고려로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임</li> <li>UNHCR도 단일절차로 난민이나 '다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' (인도적 지위 등 포함)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</li> </ul>
제35조 (유엔난민기 구와의 교류 ·협력)	<p>①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난민 등의 상황</li> <li>2.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</li> <li>3. 난민 등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및 장차 시행될 법령과 행정규칙</li> <li>4.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 의견 제시</li> </ol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&lt;삭제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협약 (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)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</li> </ul>
제44조 (난민의 가족결합 보장)	<p>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 가족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입국을 허가하여야 있다.</p>	<p>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 가족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가족결합의 원칙'은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유엔의 권고사항임</li> </ul>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46조 (귀화)	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대한 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「국적 법」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리나라의 귀화요건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단기간이라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</li> <li>조기에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체류 및 지원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이는데, 이는 체류제도 개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</li> </ul>
제48조 (생계비지원 등)	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	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과의 형평성 문제, 국가재정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생계비 지원보다는 제한적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</li> </ul>
제51조 (교육권)	미성년인 난민신청자 및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초·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진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신청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자녀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불법체류자의 남용적인 난민신청 증가 우려</li> </ul>

### 추가되어야 할 조항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00조 (소송관할 특례)	<규정 없음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</li> <li>서울고등법원의 난민소송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소송 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여 소송기간 단축</li> <li>(입법례) 특허소송은 2심제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(특허법 제186조)</li> </ul>
제00조 (난민심사 신속절차 제도)	<규정 없음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인정요건이 명백히 총 족되지 않은 경우 신속절차로 심사할 수 있다.</li> <li>다음의 경우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이라 볼 수 있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다른 신원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</li> <li>체류 만료에 임박해 체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</li> </o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백히 남용적인 신청건은 별도의 절차로 처리</li> <li>(입법례) 독일은 경제적 사유로 난민신청한 자 등은 신속절차로 처리 (Asylum Procedure Act, Section 30)</li> </ul>

## 법체계 관련 조항

조문	제정안	수정안	이유
제6조 (공항·항만 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)	②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·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함이 타당</li> </ul>
제18조 (난민의 인정 등)	<p>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, 그 결정의 이유 및 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 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.</p>	<p>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, 그 결정의 이유 및 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 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의 형사·민사상 불복기간이 7일, 14일인 점에 비추어 30일은 지나치게 장기</li> </ul> <p>⇒ 현행 출입국법에 14일로 규정</p>
제22조 (이의신청)	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등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최초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	<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.</li> <li>소송법에서도 기간이 훈시 규정인 경우가 많음</li> <li>현재 인력 부족 등 실질적 여건상 기간명시에 대한 부담이 있음</li> </ul>
제26조 (법적용례)	②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과 「행정심판법」을 준용한다.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(제3조 제2항제9호)과 충돌됨</li> </ul>